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1

발의연월일: 2021. 5. 31.

발 의 자:이원택・송재호・윤재갑

한병도 • 이상헌 • 위성곤

이규민 · 이학영 · 양정숙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 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억원"을 각각 "50억원"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통계법」 제22조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에 따른 작물재배업 및 축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u>기업을 포함한다)</u>
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성	}속"이라	한다):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금액
을	한도로	하는 기	·업상속	재
사 >	가액에 ~	상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 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u>1</u>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1</u> 5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③ ~ ①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5
_
<u>0억원<u>5</u></u>
0억원
③ ~ ① (현행과 같음)